

제18장
제도적 장치

제18.1조
공동위원회의 설치

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바에 따라, 장관급 또는 고위 공무원급에서 회합할 수 있는 한국-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(이하 “공동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양 당사국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,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고위 정부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된다.

제18.2조
공동위원회의 기능

1.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.
 - 나.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 - 다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.
 - 라.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채택한다.
 - 마. 양 당사국 간 무역과 투자를 더욱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.
 - 바.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나 분쟁을 논의한다. 그리고
 - 사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.

2. 공동위원회는

- 가.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개발할 수 있다.
- 나. 그 기능 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다. 적절한 경우, 소위원회가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.
- 라.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.
- 마. 제11.24조(준거법) 및 제11.25조(부속서의 해석)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. 그리고
- 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8.3조

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

공동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자신의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.

제18.4조

공동위원회의 회의

- 1.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 그리고 그 이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빈도로 회합한다.
- 2.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교대로 소

집한다.

3. 각 당사국은 자국의 대표단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.
4. 공동위원회는 전자우편,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 18.5 조

소위원회

1. 이 협정에 따라 다음의 소위원회가 설치된다.
 - 가. 상품 무역, 원산지 규정,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,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그리고 무역 구제 업무를 다루는 상품 소위원회
 - 나.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, 기업인의 일시 입국 그리고 투자 업무를 다루는 서비스 및 투자 소위원회
 - 다.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
 - 라. 금융서비스 소위원회, 그리고
 - 마. 경제협력 소위원회
2. 공동위원회는 자신이 이 협정상의 어떠한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, 제 1 항에 열거된 소위원회 외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소위원회는 그 각각의 첫 번째 회의에서 자신의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. 소위원회의 그 밖의 기능은 소위원회가 설치되는 개별 장에 명시된다.

제18.6조

연락처

1.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은 다음의 총괄 연락처를 통하여 촉진된다.
 - 가. 한국의 경우, 한국 산업통상부, 그리고
 - 나. 말레이시아의 경우,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

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
2. 각 당사국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
3.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다른 쪽 당사국의 연락처는 문제가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 촉진을 지원한다.
4. 양 당사국 간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.